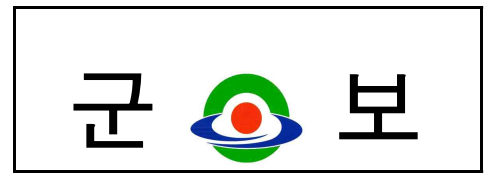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94호 2022. 9. 29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대심3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95호)
- 탑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96호)
- 무이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97호)
- 대죽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2-98호)

공 고

-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1219호)
-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1230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대심3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대심3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『농어촌 정비법』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대심3리 마을만들기
2. 위 치 : 예천군 예천읍 대심3리 일원
3. 사업의 목적 :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 업 비 : 500백만원
5. 주요 사업내용
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마을회관 리모델링
 - 지역경관개선 : 주민쉼터 조성
 - 지역역량강화 : 마을학예사, 마을가꾸기 교육 등
6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7.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3년(2년간)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(☎054-650-73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탐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탐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『농어촌 정비법』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탐2리 마을만들기
2. 위 치 : 예천군 은풍면 탐2리 일원
3. 사업의 목적 :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 업 비 : 500백만원
5. 주요 사업내용
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마을안길 확포장, 마을회관 신축
 - 지역경관개선 : 분리수거장 설치, 폐비닐 집하장 보수
 - 지역역량강화 : 마을학예사, 마을가꾸기 교육 등
6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7.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3년(2년간)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(☎054-650-73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무이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무이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『농어촌 정비법』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무이1리 마을만들기
2. 위 치 : 예천군 용궁면 무이1리 일원
3. 사업의 목적 :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 업 비 : 500백만원
5. 주요 사업내용
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마을안길 확포장, 마을회관 리모델링
 - 지역경관개선 : 마을진입로, 마을회관 앞 등 경관개선
 - 지역역량강화 : 건강체조, 주민문화교육 등
6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7.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3년(2년간)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(☎054-650-73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죽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대죽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『농어촌 정비법』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대죽리 마을만들기
2. 위 치 :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일원
3. 사업의 목적 :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 업 비 : 500백만원
5. 주요 사업내용
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마을안길 확포장, 마을회관 리모델링
 - 지역경관개선 : 우물복원 및 화단조성
 - 지역역량강화 : 건강나눔교육, 경관개선교육 등
6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7.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3년(2년간)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(☎054-650-73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- 강문화전시관 관람료에 경로 우대 요금을 신설하고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자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강문화전시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강문화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기반을 마

련하기 위함

- 예천군 삼강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강나루 캠핑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강문화전시관 관람료 전액 면제 대상자 추가(안 제7조제1항제1호)

- 국가유공자법, 독립유공자법, 참전유공자법, 고엽제법, 5·18유공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의사상자법,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·유족
- 단체 인솔자(내국인 20명당 1명, 외국인 10명당 1명)

나. 캠핑장 시설(오토캠핑장 제외)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(안 제15조제1항)

-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
 - 국가유공자법, 독립유공자법, 참전유공자법, 고엽제법, 5·18유공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의사상자법,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·유족

다. 만 65세 이상 강문화전시관 관람료 감면(안 별표 1)

- 3,000원 → 2,000원

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잘못 표기된 명칭을 쉬운

말로 수정(안 제12조제1호, 별표 2)

○ 모발홈 → 펜션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문화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uly20k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문화관광과

3) 팩스 : 054-650-68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(전화: 054-650-680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등록된 장애인”을 “등록된 장애인(보호자 1인 포함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, 삼강주막 및 삼강나루캠핑장 이용자”로 한다.

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
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라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

람

마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

당하는 사람

바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

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사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

조에 해당하는 사람

자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

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차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

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
카. 단체 인솔자(내국인 20명당 1명, 외국인 10명당 1명)

제12조제1호 중 “모빌홈”을 “펜션”으로 한다.

제1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

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
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

하는 사람
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

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

에 해당하는 사람

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- ③ 감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와 동행하여야 한다.
-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2. 제정이유

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장난감도서관의 기능(안 제4조)

다.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제 운영(안 제5조 ~ 제9조)

-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함
- 회원의 의무와 이용제한 사유를 정함
- 연회비의 납부 및 환급 사유, 면제 조건에 대해 규정

라.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6조)

-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- 위탁계약은 3년이며,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음
- 위탁 해지사유와 위탁금 환수 사유를 규정함
- 장난감도서관을 지도·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4. 제정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주민복지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esrysry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주민복지실

3) 팩스 : 054-650-6360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(전화 : 054-650-621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난감도서관”이란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·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회원”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대여자료”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영유아의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미취학 아동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 등)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“예천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”(이하 “장난감도서관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4조(기능)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장난감 등의 구매·정리·분류·보관
2.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·열람·대여
3.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

제5조(회원제 운영)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일반회원 :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,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.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.
2. 시설회원 :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나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다. 그 밖의 협약 기관

③ 회원의 자격은 제8조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
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장난감,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

2.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

3.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(회비의 납부 및 환급)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,000원, 시설회원 50,000원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·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.

④ 회원은 매년 가입(갱신)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,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회비의 면제 등)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3. 부모 또는 아동이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
6.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0조(대여자료 기증)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

있도록 유관기관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·도서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.

제11조(운영 및 위탁)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·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위탁운영자 선정) 군수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및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13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위탁운영자의 성명(비영리법인·단체명 및 개인)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과 업무내용
4.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,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.

④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의 해지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2.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제15조(위탁금의 환수)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사업 목적 외에 위탁금을 사용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은 경우

3. 관계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
제16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·서류,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